

1.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 대상을 명시한 규정이 상위법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한편,

병역처분 통보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체검사와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조문 삭제(안 제110조)

나. 병역명문가 신청서 신설(안 제115조의3 및 별지 제14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3(병역명문가 신청서) 영 제163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제목 “병역처분(병역판정 입영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결과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중 “- 재학연기 사항(기간 등)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를 삭제한다.

(앞쪽)

신체검사일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사 사항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시력(맨눈)		혈압(mmHg)	
	cm	kg		좌	우	수축기	이완기
	색각	안과	내과	외과			

고용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로, “외의 업무에”를 “병역지
정업체(업체명 자필 기재(고용주))의 근무지(세부주
소 자필 기재(고용주)) 이외의 장소에서”로 한다.
서식 14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의3의 및 별지 제14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사이버상담 : <http://www.mma.go.kr>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법적근거	병역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병역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법 위반사항	기피일자			위반조항		
	기피요지					
공개사항	공개내용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				
	공개예정일					
	공개방법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제출내용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유				

의견제출 사유 의 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소명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피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병역의무 이행 시 기피사실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명서 1부. 끝.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10조(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영</u> <u>제146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u> <u>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사람으로 한다.</u></p> <p><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30세 이하인 사람. 다</u> <u>만, 병역준비역으로서 법 제58</u> <u>조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u> <u>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u> <u>에는 35세 이하인 사람으로</u> <u>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병역준비역</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u> <u>아니한 사람</u></p> <p><u>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지</u> <u>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u></p> <p><u>3. 보충역으로서 예술·체육요</u> <u>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전</u> <u>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u> <u>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u> <u>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u> <u>인 사람</u></p> <p><u>4. 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
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
한 37세 이하인 사람

<신 설>

제115조의3(병역명문가 신청서)
영 제163조의5제1항에 따른 병
역명문가 신청서는 별지 제140
호서식에 따른다.